

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

신청인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전부명령에 의하여 신청인을 승계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승계인 ●●●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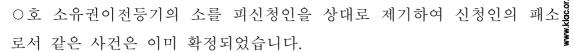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○○. ○. ○. 귀원 20○○년 금제○○○호로서 금 1,000,000원을 공탁하였는바,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,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바 있으며, 신청 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○○가합○○



2. 따라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증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승계인은 위 공탁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 자는 신청인의 승계인으로서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승계인은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오나 그동안 피신청인 등이 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	공탁서	1통
1.	판결정본	1통
1.	확정증명원	1통
1.	전부명령결정정본	1통
1.	송달증명원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○○. ○. ○. 위 신청인의 승계인 ●●● (날인)

제출법원	www.klac.or.kr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25조	
मो छ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